
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영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32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8.

발 의 자 : 김영배 · 김태선 · 이학영
김동아 · 한정애 · 손명수
박지원 · 부승찬 · 문금주
민병덕 · 홍기원 · 이개호
박수현 · 서삼석 · 한병도
최혁진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,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,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유튜브 등에서 특정 공익신고자의 실명이 공개되고, 해당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댓글, 영상,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공익신고자가 심각한 명예훼손과 생업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누구든지 이러한 위법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, 벌칙을 상향 조정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하도록 형벌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확보하고자 함

(안 제12조의2 신설 등).
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신고) ① 누구든지 제12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5년”을 “7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(併科)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설></u> 제30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<u>5년</u>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u><후단 신설></u> 1. 2. (생략) ② . ③ (생략)	<u>제12조의2(공익신고자등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신고) ① 누구든지 제12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.</u> <u>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 제30조(벌칙) ① ----- -----<u>7년</u>----- ----- -----<u>.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(併科)할 수 있다.</u> 1. 2. (현행과 같음) ② . ③ (현행과 같음)